●海外建設促進法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全文改正 1993·8·5 法律第4573號
개정 1996·12·30 법률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1997·8·28 法律第5386號(情報通信工事業法)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1·29 法律第5726號(電氣工事業法)
1999·2·5 法律第5815號(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2·8 法律第5901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外建設業의 申告와 海外工事에 대한 지원등 海外建設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海外建設産業의 振興과 國際收支의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1. "海外工事"라 함은 海外建設工事와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을 말한다.
2.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施行되는 土木·建築·産業設備와 造景·電氣·情報通信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를 말한다.
3.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에 관한 企劃·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監理·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을 말한다.
4.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을 수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5. "海外建設業者"라 함은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하고, 직접 또는 現地法人을 통하여 海外建設業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法人을 말한다.
6. "現地法人"이라 함은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를 한 法人을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海外建設業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電氣工事에 관하여는 電氣工事業法을, 情

報通信工事에 관하여는 情報通信工事業法을 적용한다. 〈개정 96·12·30, 97·8·28〉

第4條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지원)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政府의 지원에 관하여는 海外建設業者를 對外貿易法, 信用保證基金法등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 貿易業者로 본다.

第5條 (海外建設振興計劃의 수립등) 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市場의 동향과 海外建設政策에 관한 海外建設業者의 의견을 조사하여 長期 海外建設振興計劃 및 年度別 海外建設推進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章 海外建設業의 申告

第6條 (海外建設業의 申告) ①海外建設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별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개정 96·12·30, 97·8·28, 99·1·29, 99·2·8〉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3.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4.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를 한 者
5.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
6. 騷音·振動規制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
7. 海外工事의 受注(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者가 공동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8. 貿易業者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③第2項에 規定된 者가 申告할 수 있는 營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에게 海外建設業申告

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⑤削除 〈99·2·8〉

⑥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公企業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企業은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海外建設業者로 본다. 〈改正 99·2·8〉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내용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第7條 내지 **第9條** 削除 〈99·2·8〉

第3章 現地法人의 設立등의 申告 및 보고

第10條 (現地法人의 設立등의 申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現地法人을 設立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現況을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를 받은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第11條 및 **第12條** 削除 〈99·2·8〉

第13條 (海外工事狀況報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受注活動 및 施工狀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4章 海外工事의 지원등

第14條 및 **第15條** 削除 〈99·2·5〉

第16條 (優秀海外建設業者의 지정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을 開拓하거나 海外建設受注實績등이 우수한 海外建設業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優秀海外建設業者(이하 "優秀業者"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

12·13 法5454〉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市場을 지정하여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開拓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優秀業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을 開拓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第17條 (合作受注施工의 권고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國際競爭力의 强化와 大規模工事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海外建設業者 2人이상의 合作受注 및 施工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作受注 및 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 (技術開發)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이상의 海外工事를 受注한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그 受注額의 일부를 建設技術의 先進化를 위한 技術開發에 投資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에 投資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5章 (第19條 내지 第22條) 削除 〈99·2·8〉

第6章 海外建設協會

第23條 (海外建設協會의 設立등) ①海外建設業者는 그 權益保護와 海外建設業의 건전한 발전 및 海外工事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海外建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者는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改正 99·2·8〉

⑤削除 〈99·2·8〉

第23條의2 (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이상이 發起하고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第24條 (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海外工事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蒐集·分析
2. 海外建設振興을 위한 國際民間協力의 추진
3. 海外建設業에 관련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4. 會員의 品位維持
5. 海外建設業에 관련된 者에 대한 敎育訓練 및 福祉事業
6. 海外建設의 弘報 및 刊行物의 發刊
7. 海外工事機資材의 共同購入 및 融資·借款과 보증의 알선
8.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第25條 (總會) ①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會員 全員으로 구성한다.

③總會의 운영·議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6條 (協會의 任員등) ①協會에 會長 1人을 두되, 總會에서 選出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協會의 任員數·任期 및 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指導·監督)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指導·監督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8條 (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監 督

第29條 내지 **第32條** 削除 〈99·2·8〉

第33條 (代理施工)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不實施工으로 인하여 對外的인 公信力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發注者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海外建設業者(이하 "代理施工者"라 한다)에게 당해 工事를 代理施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者와 被代理施工者는 下都給契約 또는 對替契約의 形式에 의하여 工事施工에 관한 權利·義務를 지체없이 引繼·引受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에 따른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補塡할 수 있도록 代理施工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8章 補 則

第34條 (權限의 委託)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5條 및 **第36條** 削除 〈99·2·8〉

第9章 罰 則

第37條 (罰則) 海外工事의 不實施工을 하여 竣工전에 工事가 중단됨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外建設業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5千萬원이하의 罰金을 併科한다.

1.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의 원인을 제공한 者
2. 海外工事의 支給保證人에게 財産上 損失을 가한 者

第38條 (罰則)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粗雜하게 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후 당해 工事의 瑕疵補修義務期間내에 目的物에 중대한 損壞가 생기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영위한 者

第4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7條 내지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削除 〈99·2·8〉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5. 削除 〈99·2·5〉

6. 削除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 (海外建設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4條 (現地法人의 設立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外建設業者가 設立하거나 인수한 現地法人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建設部長官에게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現地法人의 設立등에 관한 現況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 (海外工事遂行計劃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거나 許可申請중인 者는 第1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第6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海外建設振興基金은 第1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振興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 및 物品에 관하여 海外建設協會가 가지는 權利·義務는 建設部長官이 包括承繼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

第27條第4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登錄의 효력을 잃거나 取消된 때

②輸出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중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③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第3項 後段중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로 보며"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同條第4項중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④港灣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第6項중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서 정한 工事 및 用役을"을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海外工事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附 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 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外建設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振興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가지는 權利·義務는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海外建設協會가 包括承繼한다.

第4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은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5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64號를 削除한다.

建設交通部組織図（2005.9.1施行：１室、６本部、13官、73チーム、１センター）

（建設交通部の歴史）

48年８月　大韓民国建国
48年11月　交通部設置(1室･6局･29課)
55年２月　復興部設置(2局･9課)
61年６月　復興部→建設部(4局･18課)
61年７月　建設部→経済企画院国土建設庁
62年６月　経済企画院国土建設庁→建設部(4局･15課)
94年12月　建設部＋交通部→建設交通部(3室･6局･59課)
05年９月　局課制から本部･チーム制に移行(2室･9局･7官･1団･59課→1室･6本部･13官･73チーム･1センター)

（新組織に関する注釈）

・政策調整委員会：長官主催の本部長会議（主要政策懸案調整）
・革新チーム　　：革新、成果管理、審査評価
・政策調整チーム：中長期政策調整、政策推進委員会事務局
・国民参与チーム：市民団体、NGO、労使等紛争管理総括
・人事組織チーム：人事運用、人事制度、組織
・業務支援チーム：庶務、経理、文書
・顧客満足センター：民願総括、住宅・建築等主要民願担当

政策推進委員会 ← 主催

長官

次官

公共機関地方移転支援団

革新政策調整官
- 革新チーム
- 政策調整チーム
- 国民参与チーム
- 規制改革チーム

監査官
- 監査チーム
- 監察チーム

政策弘報管理室長
- 企画総括チーム
- 人事組織チーム
- 法務支援チーム

弘報管理官
- 弘報企画チーム
- 弘報支援チーム

財政企画官
- 予算総括チーム
- 投資審査チーム

情報化・国際協力官
- 情報化企画チーム
- 国際協力チーム

非常計画官

業務支援チーム

顧客満足センター

物流革新本部長
- 総合交通企画チーム
- 物流政策チーム
- 物流支援チーム
- 物流産業チーム
- 高速鉄道チーム

鉄道企画官
- 鉄道政策チーム
- 鉄道運用チーム
- 鉄道安全チーム
- 鉄道産業チーム

航空企画官
- 航空政策チーム
- 国際航空チーム
- 空港開発チーム

基盤施設本部長
- 基盤施設企画チーム
- 鉄道建設チーム
- 民資事業チーム
- 南北交通チーム

道路企画官
- 道路政策チーム
- 道路建設チーム
- 道路管理チーム
- 道路環境チーム

水資源企画官
- 水資源政策チーム
- 水資源開発チーム
- 河川環境チーム
- 河川管理チーム

国土均衡発展本部長
- 国土政策チーム
- 首都圏政策チーム
- 地域発展政策チーム
- 産業立地チーム

都市環境企画官
- 都市政策チーム
- 都市環境チーム
- 建築企画チーム
- 複合都市企画チーム
- 複合都市開発チーム

行政複合中心都市支援団
- 企画課
- 開発課

住居福祉本部長
- 住宅政策チーム
- 住居福祉支援チーム
- 公共住宅チーム
- 住居環境チーム
- 新都市企画チーム
- 新都市開発チーム

土地企画官
- 土地政策チーム
- 土地管理チーム
- 不動産評価チーム
- 国土情報企画チーム

国民賃貸住宅支援団
- 住宅企画チーム
- 宅地開発チーム
- 住宅建設チーム

生活交通本部長
- 都市交通チーム
- 大衆交通チーム
- 交通安全チーム
- 交通情報企画チーム
- 自動車チーム

広域交通企画官
- 広域交通政策チーム
- 広域道路チーム
- 広域鉄道チーム
- 都市鉄道チーム

建設先進化本部長
- 建設経済チーム
- 海外建設チーム
- 建設支援チーム

技術安全企画官
- 技術政策チーム
- 建設環境チーム
- 安全企画チーム
- 建設管理チーム